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 2659 호

제출년월일 : 2021년 9 월 27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갈산문화예술센터를 전문 운영주체가 위탁·운영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문화·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공사기간 : 2016. 9. ~ 2022. 2. (2022. 3월 개관예정)

○ 위 치 : 양천구 신정동 1325-3(신정도시개발구역 내 문화복합시설용지)

○ 규 모 : 지하2층/지상4층(연면적 5,295.88㎡, 대지 1,556.1㎡)

○ 주요시설 배치

구 분	면 적(㎡)	용 도
4층	815.34㎡	· 아이누리홀(소공연장, 200석), 매표소, 분장·샤워·탈의실, 시설관리사무소, 수유실
3층	815.34㎡	· 아트홀(중강당, 99석), 세미나룸강의실(96명) 양천문화원 [강의실(4개소), 미술실]
2층	815.34㎡	· 양천문화원 [사무실, 강의실, 다목적실(2),다목적체육실, 국악실, 음악실, 휴게실 등]
1층	534.12㎡	· 전시실, 카페, 안내데스크, 로비
지하1층	1,144.35㎡	· 주차장(22면), 방재센터, 창고
지하2층	1,171.39㎡	· 주차장(12면), 전기/발전기실, 기계실, 창고
합계	5,295.88㎡	

○ 운영인력 : 6명

총 인원	서무	기술분야 (전기,기계)	시설관리 (감독)	기획
6	1 (예산·대관)	2 (전기1, 기계1)	2 (음향1, 조명1)	1 (기획·무대감독)

※ 사회복무인원, 뉴딜일자리 등 기타인력 인원 변동 가능

나. 위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다. 위탁대상 사무 : **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·시설 관리 전반**

○ 시설 내 일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

○ 시설 대관 및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임대 관리

○ 홍보 및 통신망·홈페이지 등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○ 시설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
○ 기타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 및 운영 관련 업무

라. 위탁기간 : 3년 (2022. 1. 1. ~ 2024. 12. 31.)

마. 선정절차 :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·결정

바. 소요예산 : 913백만원 (천원)
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,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	519,171
인건비 등	인건비,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·여비	261,354
전산개발비 등	전산개발비, 개관홍보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	132,680
합계		**913,205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문 별첨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 련 법 령

☐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、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본다.

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양천구의회에 통보한다.